

편집자 주

위원회는 ADR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관련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외 ADR관련 법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에는 '미국 ADR 촉진법'을 게재한다.

미연방법규집 제28편

U. S. Code Title 28

제 44 장 : 대체적 분쟁해결

정과 목적에 일치하도록 그 프로그램의 개선사항을 채택하여야 한다.

§ 651.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의 근거

(a) 정의 - 이 장(章)에서 말하는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이란 판사의 재판을 제외한 이 장 654조 내지 658조 소정의 조기 중립 평가, 조정, 간이재판, 중재 등의 절차를 통하여 중립적인 제3자가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보조하는 모든 절차 내지 과정 모두를 말한다.

(b) 권한 - 모든 미합중국의 지방법원은 2071조 (a) 항에 의거하여 제정된 지방법원규칙에 따라, 이 장의 내용과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파산법상 대심절차를 포함한 모든 민사소송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의 활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654조에 따라 중재의 활용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모든 미합중국의 법원은 제2071조 (a)에 따라 그 관할 지역 내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의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해 법원 고유의 대체적 분쟁해결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시행할 수 있다.

(c) 현재의 대체적 분쟁 해결 프로그램 - 1998년의 대체적 분쟁해결법 제정 시에 이미 대체적 분쟁해결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법원의 경우, 당해 법원은 그 프로그램의 유용성에 대하여 조사하고 당해 장의 규

(d) 대체적 분쟁해결 프로그램의 운영 - 모든 미합중국의 지방 법원은 당해 법원의 대체적 분쟁해결 프로그램을 시행, 운영, 감독 그리고 평가하기 위하여 대체적 분쟁해결 관례와 절차에 익숙한 노무자, 혹은 사법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임명된) 그들은 또한 그 법원의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 중립인과 중재인으로 종사할 변호사를 고용하고 감독하고 교육시킬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e) 제9편에는 영향이 없음 - 이 장은 미합중국 법규집 9편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f) 프로그램 보조 - 연방 사법 센터와 미합중국 법원의 행정기구는 성공적인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각각의 관례들을 확인하고, 필요하고 적절한 부가적인 보조를 지원함으로써 대체적 분쟁해결 프로그램의 창설과 향상을 위하여 지방법원을 보조할 수 있다.

§ 652. 관할

(a) 적절한 사건에 있어서 대체적 분쟁해결의 고려 - (b), (c) 항에서 규정된 모순되거나 예외적인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방 법원은 제2071 (a)조를

근거로 지방법원규칙을 제정하여 모든 민사 소송에서의 당사자가 소송의 적절한 단계에서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의 활용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지방법원은 모든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에게 제654조부터 제658조에 규정되어 있는 조정, 조기 중립 평가, 약식 재판, 중재 또는 이 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를 적어도 하나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특정 사건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의 활용을 요구하기로 한 지방법원은 조정과 조기 중립 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중재를 할 수 있다.

(b) 대체적 분쟁해결의 고려로부터 면제될 수 있는 사건 - 지방법원은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의 활용이 적합하지 않은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 장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그 면제 여부를 정함에 있어서 해당 법원은 당해 지방의 미국 법률가협회를 포함하여 미합중국 변호사 협회의 구성원들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c) 법무장관의 권한 - 이 장의 어느 규정도 미합중국을 위한 소송을 수행하는 법무장관의 권한,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연방 기구의 권한과 법무장관에 의한 소송 위임 권한을 변경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

(d) 비밀엄수 조항 -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에 관한 비밀엄수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이 편 제131조를 구체화하는 세부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는, 지방법원은 제 2071 (a) 항에 근거하여 지방법원 규칙으로써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의 비밀 엄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고 분쟁 해결 과정상의 내부적인 진술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

§ 653. 중립인

(a) 중립인 패널 -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의 활용을

명할 수 있는 법원은 모든 종류의 소송 절차에서 소송당사자에 의하여 활용 가능한 중립인을 임명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를 채택하여야 한다. 법원은 패널 중에서 중립인의 선정을 위한 고유한 절차와 기준을 공포하여야 한다.

(b) 자질과 교육 -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에서 중립인으로 종사하는 개인은 중립인으로서의 자질이 있어야 하며, 적절한 분쟁해결 절차에서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당해 목적을 위하여 지방법원은, 특히 중립인으로서 종사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은 치안판사, 사적 분야에서 임명된 전문적 중립인, 그리고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에서 중립인으로서 봉사하도록 교육을 받은 사인을 활용할 수 있다. 중립인의 결격 사유와 관련한 당해 편의 제131장에 구체적 규정이 채택되기 전까지 법원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편의 452조에서의 결격 사유, 다른 적용 가능한 법, 그리고 전문적인 책임 기준을 포함하여 제2071 (a) 항에서 중립인의 결격 사유와 관련한 규칙을 제정·공포하여야 한다.

§ 654. 중재

(a) 소송사건의 중재 회부 - 지방법원은 다른 법 규정들 또는 제652조 (a), (b), (c)항 및 본 조 (d)항의 규정 내용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동의할 경우에는 당해 법원에 계속 중인 민사소송사건(파산사건에서의 대심(對審)절차를 포함하여)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재에 회부될 수 없다.

(1) 미연방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근거하는 사건;

(2) 관할이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이 편[제28편]의 제1343조에 근거하는 사건;

(3) 손해배상 청구액이 150,000달러를 초과하는 사건.

(b) 동의 사건에서의 보호장치 - 본 조에 규정된 절차와 관련하여 이 편[제28편]의 제131장에 따라 규칙들이 채택될 때까지, 지방법원은 동의에 의한 중재 사건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보장하는 절차를, 제 2071조 (a)항에 따라 지방법원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중재를 하기로 하는 동의는 자유로운 인식 아래에서 획득되어야 하고;

(2) 양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나 변호인은 중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c) 추정 - 위(a)항의 (3)과 관련하여 지방법원은, 손해가 150,000달러를 넘는다는 변호사의 입증에 없는 한, 손해액이 15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d) 기존의 프로그램들 - 이 장의 어떤 내용도 사법(司法)의 개선 및 사법에의 접근에 관한 법률(공법 100-702; 그리고 공법 105-53 제1조에 의해 개정된)의 제IX편 제[1]조에 따라 행해지는 중재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655. 중재인

(a) 중재인의 권한 - 제654조에 따라 회부된 사건의 중재인은 사건을 중재절차로 회부한 지방법원의 관할 지역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중재의 심리를 지휘·수행;

(2) 선서나 선서에 갈음하는 확약을 하게 함; 그리고

(3) 판정을 내림.

(b) 자격의 기준(Standards for Certification) - 중재절차를 인가한 각 지방법원은 중재인에 대한 자격의 기준을 확립해야 하며, 중재인이 이 장과 그러한 기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중재인은 제453조 소정의 선서나 그에 갈음하는 확약을 해야 하고;

(2) 중재인은 제455조 소정의 결격 규칙(dis-qualification rules)에 기속된다.

(c) 면제 - 대체적 분쟁해결 프로그램에서 중재인으로 복무하는 모든 개인은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지위에서 복무하는 개인은 법이 부여하는 면책과 보호를 보장받는다.

§ 656. 소환영장(Subpoenas)

(소환영장에 관한) 연방 민사소송규칙 45는 이 장에 따라 행하는 중재심리에서 증인의 출석과 서증의 제출에 대한 영장에 적용된다.

§ 657. 중재판정과 판결

(a) 중재판정의 제출과 효력 - 이 장에 따라 중재인이 내린 판정은, 승리한 당사자 혹은 원고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해 그 판정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제출했던 증거들과[증명;proof]과 함께 중재심리가 종결된 후 지체 없이 사건을 중재에 회부한 법원의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그러한 판정은 (그에 불복하여) 새로이 재판을 요청하는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법원의 판결로 간주된다. 위와 같이 확정된 판정은 상소 절차 등에 따라 타 법원의 또 다른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른 법원의 판결

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동일한 법 적용을 받는다.

(b) 중재판정의 비밀엄수 - 지방법원은 제2071조 (a)항에 따라 채택한 지방법원규칙에 따라, 법원이 민사소송상의 최종판결을 내리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이 장에 따라 내려진 중재판정의 내용이 잠재적으로 사건을 배당받을 수 있는 판사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중재판정의 신규재판 -

(1) 재판신청의 시한 - 위(a)항에 따라 중재판정을 지방법원에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어느 일방 당사자는 지방법원에 신규재판(a trial de novo)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법원사건목록으로의 회귀 - 신규재판을 신청하면 사건은 법원의 사건목록으로 회귀되며 모든 측면에서 중재에 회부되지 않았던 것처럼 다루어져야 한다.

(3) 중재 증거의 배제 - 신규재판에서 법원은 중재절차가 있었다는 어떤 증거도 인정해서는 안 되고, 중재판정의 본질적 내용이나 요지, 혹은 중재절차상의 행위와 관련한 어떤 사실도 증거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A) 증거가 연방증거규칙(the Federal Rules of Evidence)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법원에서 허용될 경우; 혹은

(B) 당사자들이 다른 방식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58. 중재인과 중립인들에 대한 보상

(Compensation of arbitrators and neutrals)

(a) 보상 - 미연방사법협의회(the Judicial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¹⁾가 승인한 지침규정(regulations)에 따라, 지방법원은 이 장에 따른 각 사건에서 중재인이나 중립인이 수행한 역할에 대해 받을 보상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b) 교통비 수당 - 미연방법원행정처장(the Director of the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Courts)²⁾이 제정한 지침규정에 따라, 지방법원은 중재인과 다른 중립인들에게 이 장에 따른 의무의 수행에 의해 필요적으로 초래된 실제의 교통비용을 변상할 수 있다.

*제 131 장 : 법원규칙

§ 2071. 규칙 제정 권한

(a) 연방대법원과 의회제정법률에 의해 설립된 모든 법원은 언제든지 업무수행을 위한 규칙을 제

1) 미연방법원의 정책결정기구로서, 연방대법원장이 매년 항소법원의 각 순회구의 수석재판관 및 각 순회구에서 1명씩의 지방법원판사를 초청하여 여는 회의를 말한다. 연방법원에서 사용하는 절차적 규칙들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소송절차의 간소화, 공정한 사법운영, 소송지연의 해소 등에 도움이 되는 규칙개정 등에 대한 정책제언을 연방대법원에 대해 제공하는 일을 임무로 한다. 타나카 히데오(田中英夫) 등 편, 『英米法辭典』, 東京大學出版會, 2000, 482면 참조.

2) 미연방법원행정처는 미연방사법협의회(the Judicial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를 지원하고 사법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하위기구로서 1939년에 만들어졌다. 미연방사법협의회의 감독 아래 연방대법원을 제외한 연방법원, 파산재판관, 보호관찰관 및 치안관사의 재판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고, 사건처리상황을 조사하며 통계를 작성하는 일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타나카 히데오(田中英夫) 등 편, 위의 책, 26면 참조.

* 제44장에서 자주 인용되는 제2071조를 함께 신는다

정할 수 있다. 그러한 규칙은 의회제정법률과 모범 행위규칙들(rules of practice), 그리고 이 편의 제 2072조에 따라 규정된 절차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b) 연방대법원 이외의 법원이, 위(a)항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규칙은 오직 적정한 공지(公知)와 의견표명의 기회가 제공된 이후에야 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규칙은 규칙제정법원이 특정한 일시에 효력을 발하고, 그 규칙제정법원이 처리할 수 있는 계속(繫屬)사건의 절차에도 효력을 미친다.

(c)

(1) 위(a)항에 따라 제정된 지방법원의 규칙은 관련 순회재판구의 사법위원회(the judicial council of the relevant circuit)에 의해 개정되거나 폐지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유효하다.

(2) 위(a)항에 따라 연방대법원 이외의 법원이 제정한 다른 규칙은 미연방사법협의회(the Judicial Conference)에 의해 개정되거나 폐지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유효하다.

(d) 위(a)항에 따라 지방법원이 제정한 규칙의 사본은 사법위원회(the judicial council)에 제출되어야 하고, 위(a)항에 따라 연방대법원 이외의 법원이 제정한 모든 규칙의 사본은 미연방법원행정처장(the Director of the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Courts)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또한 공중(公衆)이 입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 규칙을 제정하는 법원이 어떤 규칙이 즉각적으로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라면, 동법원은 공지와 의견표명기회의 제공 없이도 본 조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동법원은 그 후 지체 없이 그러한 공지와 의견표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f) 지방법원에 의한 규칙제정은 오로지 본 조에 따라서만 가능하다.

■ 번역 : 오 규 성 (춘천지방법원 판사)